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주)○○관광 후산부가 회사 주관의 체육대회중 넘어져 상병명 “좌측 쇄골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경우

(89-47호 89. 3. 20. 취소)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주○○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원처분청 : 강릉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관광

주 문

강릉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88. 10. 26. 자 “주○○”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 주○○(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강릉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10. 26.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 주○○은 (주)○○관광 소속 후산부로 근무중 1988. 10. 1. 회사가 주관한 근로자 체육대회 축구 경기중 선수끼리 부딪쳐 넘어지면서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쇄골 골절”로 원처분청에 요양신청하였으나 원처분청에서는 노동조합이 주관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하던 중의 재해로 회사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 업무외의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회사가 주관하였고 체육회 경비의 부담도 회사에서 지출(일부)하였고 주휴, 월차 및 년차 유급휴가 처리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노동조합측이 주관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근로자 체육대회가 회사 또는 노동조합의 어느쪽에서 주관하였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
(1988. 2. 3. 주○○)
2. 원처분청 의견서
(1989. 2. 9. 강릉지방노동사무소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결정서 사본
(1989. 1. 27. 홍○○)
4. '88년도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계획(안)
기안문 및 예산안 사본(1988. 9. 17. (주)○○탄광 대표이사 정○○)
5. 소견서 사본
(1988. 10. 오형균 정형외과의원장)
6. 지급 결의서 사본
(1988. 9. 30. (주)○○탄광 대표이사)
7. 자술서 사본
(1989. 1. 24. 총무과장 신○○)
8. 단체협약서 사본(제 42조) (○○탄광)
9.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주)○○탄광에서 근무 중 1988. 10. 1. 근로자 체육대회 축구 경기중 선수끼리 부딪쳐 넘어지면서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쇄골 골절”로 오형균 정형외과에서 요양

하면서 원처분청에 요양신청 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노동조합이 주관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하던 중의 재해로 회사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 업무외의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근로자 체육대회는 회사가 주관하고 또한 경비부담도 회사에서 지출(일부)하였고 주휴, 월차 및 년차 유급휴가 처리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 회사에서 88년도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계획 및 예산안 기안문에 의하면 전 종사원의 사기양양 및 노사간의 화합과 단결을 한층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키로 하였고 참가대상은 전 종사원 및 그 가족이었으며 개최 세부계획은 노동조합과 협의 결정토록 하였음이 명백하다.

둘째 : 지급결의서 사본을 검토한 바 회사에서 노사체육대회 경비 2,191,500원중 우선 1,000,000원을 지출하였고 회사 총무과장 신○○의 자술서에 의하면 실질적인 행사의 주관은 회사에서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셋째 :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 42조(체육대회 및 수련대회)는 “회사는 전 조합원의 위로와 단결을 위하여 노사체육대회를 실시한다. 단, 개최시는 노사합의하에 결정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상의 각종 자료에 의하여 종합하면 1988. 10. 1. 자 근로자 체육대회는 회사가 주관하여 체육행사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이 축구 경기중 선수끼리 부딪쳐 피재된 것은 작업중의 부상은 아니나 사용주의 지배관리하에 체육행사 시행중의 재해로 이는 업무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외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한국전기통신공사 근로자가 연수원에 파견되어 교육 중 휴식 및 자유시간에 동료와 탁구를 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89-51호 89. 4. 17.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김○○

주소 :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원처분청 :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전신전화국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12. 5.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전기통신공사 ○○전신전화국 소속 근로자로서 1988. 9. 27-9. 30. 까지 동공사 연수원 파견근무 발령을 받고 교육중인 1988. 9. 29. 18:30경 휴식 및 자유시간에 동료

와 같이 체력장에서 탁구를 치다가 넘어져 피재되어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 9조의 3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연수원 파견 근무중의 재해라 할지라도 연수원 학생수칙 등 내용으로 보아 18:00-21:00까지는 휴식 및 자유시간으로서 외출 등이 허용될 뿐 아니라 의무적으로 체력단련의 지시나 강요가 없었고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한 사적행위로서 업무수행중으로 볼 수 없어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연수교육(합숙)중 휴식 및 자유시간이라 할지라도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여 체력단련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1988. 9. 29. 18:30경 발생한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 (1989. 2. 2. 김○○)
2. 원처분청 의견서 (1989. 2. 13.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결정서 사본 (1989. 1. 17. 김○○)
4. 요양신청에 대한 결정지시 (불승인 1988. 12.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5. 재해조사 복명서 사본

(1988. 조사자 7급 김○○)

6. 청구인 진술조서 사본

7. 기타 참고 자료

이상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한국전기통신공사 ○○전신전화국 소속 근로자로서 1988. 9. 27-9. 30. 까지 동 공사 연수원 파견근무 발령을 받고 교육중인 1988. 9. 29. 18:30경 휴식 및 자유시간에 동료와 같이 체력장에서 탁구를 치다가 넘어져 피재되어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 9조의 3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연수원 파견 근무중의 재해라 할지라도 휴식 및 자유시간에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한 체력단련중 재해로 이는 사적 행위로서 업무 수행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휴식, 자유시간이라 할지라도 연수교육중 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하여 체력단련중의 재해였으며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건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 청구인은 한국전기통신공사 봉천전신전화국 소속 근로자로서 1988. 9. 27-동년 9. 30. 까지 동 공사 연수원 파견(교육)근무발령을 받고 교육중 1988. 9. 29. 18:30경 휴식 및 자유시간에 동료와 같이 체력장에서 탁구를 치다가 넘어져 피재된 사실을 일정한다.

둘째 : 청구인의 피재사건을 원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볼 때, 매일 18:00-21:30분까지는 휴식 및 자유시간으로서 당일 점심시간중에 연수원의 공식계획이나 또는 지시에 의해서 피교육자 전원이 참석한 체육행사가 아니고 청구인 임의로 동료와 같이 탁구시합을 한 것임. 다만, 연수원의 시설물을 이용하였으며 동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가 아님이다.

셋째 : 연수원 규칙 제 10조(외출 외박)중 (1)정신교육을 제외한 모든 학생은 학과시간 종료후 생활지도관에 신고한 후 외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이상의 각종 내용을 종합하여 심리하건대, 청구인의 경우 연수교육 기간중인 1988. 9. 29. 18:30경 휴식 및 자유시간에 동료들과 같이 연수원 시설인 체육단련장을 임의로 이용(탁구시합)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연수원의 공식계획이나 수시 지시에 의하여 연수생인 피교육자 전원이 참석한 체육행사나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고 연수기간중 정신교육을 제외하고 학과시간 종료 후 생활지도관한테 신고하면 자유로이 외출, 외박도 허용되는 점과 특히 휴식 및 자유시간중 임의로 체력장 이용중의 재해로서 이는 업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건 재해는 업무 개인성 및 수행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외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